

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규정

제정 2001. 6. 1 개정 2016. 9. 7
개정 2009. 4.14 개정 2019. 8.11
개정 2013. 8.23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 연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연구소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설립하는 법인승인연구소와 총장의 승인으로 설립하는 자체승인연구소로 구분한다.

제 2 장 설 립

제3조(설립)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칭, 목적, 사업내용, 조직, 연구원, 운영위원회, 재정 등을 정한 설치 연구소의 운영 내용

2. 설립계획서 및 예산

② 연구소 설립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분야가 본 대학의 연구목적과 방향에 적합하여야 하며, 육성 지원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.

2. 외부수탁연구비 획득의 유리, 대학 위상의 격상, 공동연구 활성화 등 독립적인 연구소로 발족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.

3. 전임(참여) 교원 5인 이상 또는 전임연구원 5인 이상 확보 및 일정액의 수탁연구비의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.

4. 사업계획이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.

5. 인건비, 설치공간 및 운영비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등 연구소의 자체적 경비조달 능력이 있어야 한다.

③ 법인승인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추가로 다음 설립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한다. (개정: 2019. 8.11)

1. 법인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 (신설: 2019. 8.11)

2.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 행정부서 및 정규직 직원 존치 필요성 (신설: 2019.

8.11)

3. 독립된 건물 보유 가능성 (신설: 2019. 8.11)

4. 기타 법인 이사장이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(신설: 2019. 8.11)

④ 연구산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승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이사장의, 자체승인연구소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. (신설: 2019. 8.11)

제 3 장 조직 및 직제

제4조(조직) 독립채산연구소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행정팀, 부 또는 실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(개정: 2016.9.7.)(개정: 2019. 8.11)

제5조(주요직제)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할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연구소에는 부소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독립채산연구소에는 부(실/팀)장 등을 둘 수 있으며, 부(실/팀)장 등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: 2019. 8.11)

④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는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운 영

제6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정부, 지자체, 산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비
2.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(사업, 장비임대 등)
3. 기타수입

제7조(재정의 관리) ①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②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집행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각 연구소의 연구사업계획 수립, 연구과제 선정, 연구사업 수행, 연구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, 협의하기 위해 연구소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5 장 평 가

제9조(평가) ① 연구소의 설립목적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평가 및 감사의 시기, 방법, 결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'부설연구소 운영 및 평가지침'을 따른다.

제10조(평가결과의 적용) ① 우수연구소의 경우 총장이 가용범위 내에서 정책연구비의 지원, 강의부담 경감, 행정인력지원, 연구공간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② 실적이 저조한 연구소의 경우 총장은 제반 대학 지원의 감축은 물론 유사성격의 연구소와 통합 또는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 6 장 기 타

제11조(독립채산연구소) 독립채산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채산기관 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12조(세칙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연구소와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시행한다.

제13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산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4월 14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